

■ **업무내용**

종합적인 계획 ·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, 환경오염을 예방 · 제거 ·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·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, 에너지 등의 생산 · 저장 ·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

■ **등록기준**

1. **자본금**

법인	개인
8.5억원 이상	17억원 이상

2. **기술능력**

기술자격
기계 · 금속 · 화공 및 세라믹 · 전기 · 전자 · 통신 · 토목 · 건축 · 광업자원 · 정보처리 · 국토개발 · 에너지 · 안전관리 · 환경 ·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· 재무, 건설기획,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) 12명 이상
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**공제조합**

2024.08.08 기준

업종	1좌당	자본금	C등급 이상	D등급
산업,환경설비 공사업	1,551,800원	8.5억원	200좌 (310,360,000원)	225좌 (349,155,000원)
※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				

4. **시설 · 장비**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· 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**신규등록 소요기간**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